

설 명절과 관련한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안내

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개요

- 선거일 : 2025. 3. 5.(수)
- 예비후보자 등록 : 2025. 1. 21.(화) ~ 2. 17.(월)
- 후보자 등록 : 2025. 2. 18.(화) ~ 19.(수)
- 선거운동기간 : 2025. 2. 20.(목) ~ 3. 4.(화)[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]

※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

II 명절 선물·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

1 법규요약(법 §32~§35)

기부행위 금지·제한			
☞ 주체별 제한내용(법 §35) ※ (벌칙)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			
주 체	제한기간	제한내용	비 고
후보자와 그의 배우자, 후보자가 속한 기관·단체·시설 ※ '후보자'에는 '후보자가 되려는 사람'을 포함함. (이하 이 표에서 같음)	기부행위 제한기간 (24. 9. 21. ~25. 3. 5.)	선거인[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(해당 금고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자 및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말함.)를 포함. 이하 이 표에서 같음]이나 그 가족,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대상으로 금전·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※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- 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-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	§35①

주 체	제 한기간	제 한 내 용	비 고
누구든지	기부행위 제한기간 (24. 9. 21. ~25. 3. 5.)	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※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.	§35②
		해당 이사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	§35③
		위 규정된 행위(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에 관하여 지시·권유·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	§35④
이사장	재임 중	이사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	§35⑤

☐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(법 §33)

- 직무상의 행위 : 법 §33①1
- 의례적 행위 : 법 §33①2
- 구호·자선적 행위 : 법 §33①3 [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·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]

② 사례예시

할 수 있는 사례

[직무상 행위]

-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·물품을 그 기관·단체·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-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·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(포상을 포함함)

◆ 직무상의 행위시 주의사항(법 §33②)

- 위탁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탁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
-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함.
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‘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’에 해당됨.
 1. 종전의 대상·방법·범위·시기 등을 법령 또는 정관등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
 2. 해당 위탁단체의 대표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

[의례적 행위]

- 소속 기관·단체·시설(위탁단체 제외)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(3만원 이내)을 제공하는 행위

[구호적·자선적 행위]

-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재해구호법」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(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) 및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·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(유료복지시설은 제외)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자선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언론기관·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※ 다만,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
- 자선·구호사업을 주관·시행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기관·법인을 통하여 소년·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·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·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·소녀가장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무의탁노인, 결식자, 이재민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 - ※ 다만,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·성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
-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(야학을 포함)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

할 수 없는 사례
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(후보자가 되려는 이사장 포함. 이하 같음)이 친족 외의 선거인(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. 이하 같음)이나 그 가족(선거인의 배우자,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,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. 이하 같음)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
-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, 야유회,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금고가 개최하는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선거인에게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, 행사 개최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사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전하는 행위
- 구호적·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·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Ⅲ 전화·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

1 법규요약(법 §23~§30조의4)

- 선거운동 가능자 : (예비)후보자, (예비)후보자가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(이하 "선거운동원"), 장애인 (예비)후보자가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임한 1명(이하 "활동보조인")
- 선거운동 정의 :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
 -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
 -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

● 선거운동 방법 : 선출방법별·주체별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유의

구 분	직선	총회	대의원회	비 고(주체)
선거일 소견발표	×	○	○	후보자
선거공보	○	○	○	후보자
선거벽보	○	○	×	후보자
어깨띠·윗옷·소품	○	○	×	후보자, 선거운동원, 활동보조인
공개행사 정책발표	○	○	○	(예비)후보자
전화 [통화, 문자(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제외)]	○	○	○	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
정보통신망 [인터넷홈페이지, 전자우편(SNS 등)]	○	○	○	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
명함	○	○	×	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, 활동보조인

※ (예비)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은 (예비)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 가능

※ 예비후보자,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는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가능

2 사례예시

할 수 있는 사례

[현수막]
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
-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금고의 경비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면서 이사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는 행위

Tip

- 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, 활동보조인의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됨
- 위 할 수 있는 사례에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령상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.
 ⇨ 「옥외광고물법」 제3조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 후, 각 시·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

[문자메시지 · 인터넷 · SNS]
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다수의 회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(음성·화상·동영상 파일 등 포함)을 문자메시지, SNS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(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)
-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명절 인사를 문자메시지, SNS 등으로 전송하면서 단순히 이사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는 행위

Tip

- 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은 전화[통화, 문자(음성·화상·동영상 등 제외)], 정보통신망[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(SNS 등)]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

[인사장 · 광고]
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다수의 회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
-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금고의 경비로 명절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이사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으로 회원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
-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자신의 경비로 자신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하는 행위
-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금고의 경비로 명절인사를 위한 신문광고를 하면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이사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을 게재하는 행위

Tip

- (예비)후보자, 선거운동원, 활동보조인의 인사장·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됨

할 수 없는 사례

- 문자메시지·인터넷 홈페이지·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)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·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·금지하는 내용을 게시·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
-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문자메시지, 인터넷 홈페이지,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를 계속적·반복적으로 게시·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
- 금고가 해당 이사장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금고의 경비로 이사장의 직명·성명·사진이 포함된 명절인사 내용 등을 현수막, 문자메시지·SNS, 인사장·신문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알리는 행위

< 안 내 >

본 안내자료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·시기·목적·방법·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